

2024년도 「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」 사업

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

2024년도 고용노동부 「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」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모집하오니,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12. 21.

고용노동부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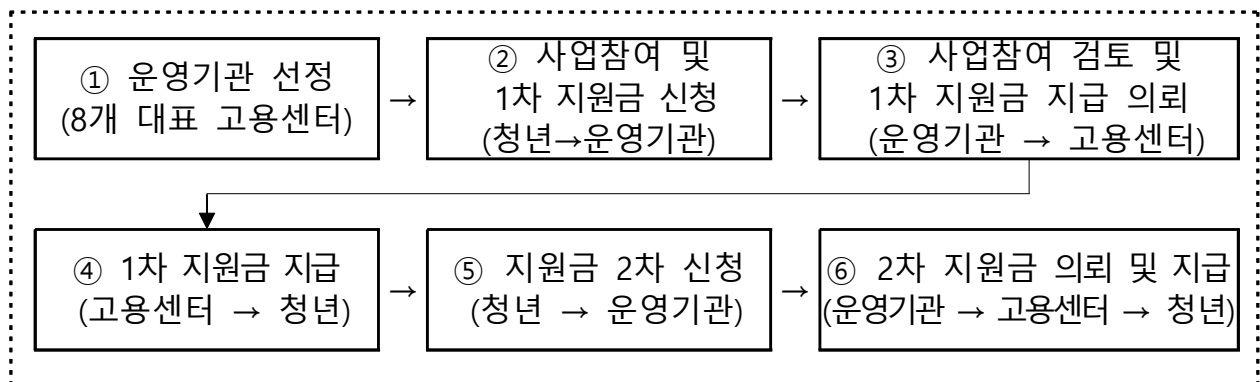
[붙임]
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운영기관 모집 공고

1 사업개요

❖ 아래 사업개요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업내용은 추후 게시될 사업 지침에 따름

- (개요) '23.10.1. ~ '24.9.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~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
- (지원대상) '23.10.1. ~ '24.9.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(만 15세~34세)
 - * 취업애로청년 우대(실업기간 4개월 이상, 고졸 학력 청년, 자립준비청년 등)
- (대상기업)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, 우선지원대상기업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)
 - * 빈일자리: 제조업 외 4개 업종 포함
 - **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대상기업은 '고용24'에서 지원대상 기업여부 확인 필요
- (지원요건)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, 고용보험 가입,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계약 등
- (지원수준)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, 6개월 차 100만원 (최대 200만원) 지원
- (추진체계) 고용센터, 민간위탁 운영기관



2 사업위탁 관련 주요내용

○ 위탁규모 : 총 2만4천8백명

* 단, 전체 위탁규모 중 2만명에 대해 우선 배정한 후, 운영기관의 사업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잔여 4천8백명 추가 배정 예정

○ 위탁기간 :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완료시 까지

○ 위탁내용

-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
- 참여 희망청년의 발굴·모집 및 상담 지원
- 참여 희망청년의 참여 신청을 접수, 적격 여부 검토
- 참여청년의 지원금 신청을 접수, 지급요건 검토 및 지급 의뢰
- 참여청년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지원
- 사업운영지침,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

○ 위탁 사업지역 : 위탁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의 광역권역* 지역

* 전국을 8개 지방청(대표지청 포함)을 기준으로 8개 권역으로 구분(이하 '광역권역')

○ 위탁운영비

※ 위탁운영비 지급기준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되,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 예정임

- (지급기준)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승인 청년* 1인당 10만원

*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승인되어 2회차(6개월 근속 이상)까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청년

- (지급방식) '24년 2회 분할 지급하되, 사업 종료 후 정산

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
○ 신청자격 : 아래 ①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중, ②~④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- ① '22~'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사업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청년내일채움공제) 참여 운영기관 중 **1회 이상 평가결과 최상위 평가그룹***

* 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) 평가결과 A등급
(청년내일채움공제) 평가결과 상위 20%

※ 해당사업은 '24년 최초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우리부 사업에 참여했던 우수 운영기관만을 대상으로 모집함

- ②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·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

- 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[별첨]

*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

*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에 따라 대학은, 해당 대학 재학생·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

- ④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도 가능

* ①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주된 사업자 및 부 사업자 모두 신청자격 중 제①요건을 만족해야하며, ② 주된 사업자는 사업 신청 접수, 지원금 지급, 참여기업 지도·점검 등을 직접 수행하여야함

○ 신청제한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- ① 사업시행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

- ② 사업시행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

- **신청규모** : 운영기관별 최소 500명 이상 위탁신청
 - * 단,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여건(사업장 수, 청년인구 수) 및 '23년 사업 참여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500인 미만으로 위탁 가능
- **제출서류** : ①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10부 또는 ②신청서 원본 1부 및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(pdf형식) 후 저장한 USB 1개
 -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「뉴스·소식-공지사항-광고」에서 다운받아 작성

4 신청기간 및 방법

- **신청기간** : '23. 12. 21.(목) ~ '24. 1. 2.(화) 18:00
- **신청방법** : 신청기관 소재지의 8개 대표지청의 고용센터(취업지원 부서)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
 - * 우편 접수는 마감일 현재 도착분에 한함
 - **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센터가 아닌 다른 고용센터와 위탁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음

5 선정절차

- **(심사)** 고용노동부 8개 대표지청 별로 「선정심사위원회」를 구성하여,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
- **(결과 통보)** 신청서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
 - *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「뉴스·소식-공지사항」 게재 병행
- **(위탁약정 체결)** 고용센터-운영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

6 문의처

- **대표지청 고용센터(취업지원부서)** * 붙임 고용센터 참고

☐ (단 독)
☐ (컨소시엄)

『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』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

기 관 현 황 (주사업자)	기 관 명		법 인 등 기 번 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소 재 지			
	대 표 자		담 당 부 서	
	전 화 번 호 (F A X)		관 리 책 임 자 (E - m a i l)	
	직 업 소 개 업 신고(등록) 여부	☐ 무료직업소개사업 ☐ 유료직업소개사업		
	기 관 유 형	☐ 비영리 ☐ 영리		
기 관 현 황 (보조사업자) *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	기 관 명		법 인 등 기 번 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소 재 지			
	대 표 자		담 당 부 서	
	전 화 번 호 (F A X)		관 리 책 임 자 (E - m a i l)	
	컨 소 시 엄 사 업 내 용		보 조 사 업 비 율 (위 탁 비 기 준)	

2024년 『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』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(지)청장 귀하

첨부서류 (10부)	1. 신청기관 일반현황(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포함) 2. 사업계획서 3.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직업소개사업 등록증, 운영기관 평가결과 증빙자료 등)
---------------	---

일 반 현 황

1. 현황 및 연혁

신 청 기 관 명		대표자	
소 재 지			
주 요 사 업 내 용			
연 락 처	전화번호 :	팩스번호 :	
설 립 연 도	년	월	
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	년	월 ~	년 월
주 요 연 혁(요약)			

2. 자본금 및 매출액(최근 3년간)

구 분	2022년	2021년	2020년	합계	평균
총 자 산					
자 기 자 본					
유 동 부 채					
고 정 부 채					
유 동 자 산					
당 기 순 이 익					
분 야 별 매 출 액					
- ○ ○ 분 야					
- ○ ○ 분 야					
자 기 자 본 비 율					
자기자본순이익률					
유 동 비 율					

※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

※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

3. 조직 및 인원

계	기획부	연구부	...	...		

※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(조직도 첨부 가능)

4.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

부서명	담당분야	성 명	연령	최종학력	근무경력	직위	담당업무	자격증
	총괄 책임자							
	등록							
	지원금 지급							

※ 자격증 사본 첨부

※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

사 업 계 획 서

1. 사업 목표

※ 2024년도 목표인원(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)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

2. 사업 내용

※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안내·홍보, 참여청년 모집 및 상담지원, 사업 신청 접수·적격 여부 심사, 지원금 신청 등

3. 사업 계획 *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,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

가. 세부 추진계획(분야별 계획마련)

※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운영 관련한 사업홍보, 청년 발굴·모집·확보 방안, 적정 상담 등 채용지원, 지역 네트워킹 활용 방안, 지원금 적기 지급 방안, 부정청구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

나. 위탁사업비 운용계획

구 분 \ 비 목	산출내역	금 액	구성비
○ 인건비 소계			
컨설턴트 보조원			
○ 경비 소계			
국내 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· · ·			
○ 계			

※ <총사업예산> 목표 인원 × 10만원

다.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

※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, 프로그램 운영실, 교육장 등의 면적{유형 자산(PC, 사무기기 등) 및 무형자산(시행체계, 상담기법, 상담도구 등) 보유 현황}

4. 유사사업 추진 실적(최근 3년간)

구분	사업 수행 실적
2023년	■ ■ ■
2022년	■ ■ ■
2021년	■ ■ ■

※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원프로그램,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

※ (정량실적) 참여자 모집 실적, 서비스 수행 실적, 관리 사업장 수,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
(정성실적)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

5. 월별 사업수행계획

월 또는 분기	목표인원	주요 사업내용	비고

사업계획서는 본 서식(A4용지, 한글파일)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, 분량은 A4용지 3매 이하로 제한함

『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』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

○ ○ 기 관 심 사 표

기 관 명			
총 직원수/ 전담직원수		신청인원	
특이사항			

주요항목	세 부 항 목	평가 점수
사업수행 능력 (30점)	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(10점)	
	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 정도 (10점)	
	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(10점)	
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(50점)	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·모집 계획의 적정성 (30점)	
	참여자 지원·관리 방안 (20점)	
인적자원 운용 계획 (15점)	인적자원 운용 방안 (15점)	
유관기관과의 협력 (5점)	지역 네트워킹 활용 (5점)	
총 계		

평가자: 위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『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』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

기 준	세 부 기 준	심 사 항 목
사업수행 능력 (30점)	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(10점)	·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(참여자 모집 실적, 취업률 등)
	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(10점)	·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, 기타 전문인력 보유정도 등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(대상자 발굴·모집의 전문성, 상담 및 관철은 일자리 선별·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) *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
	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(10점)	·취업알선전산망 보유여부, 관리프로그램, 상담·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
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(50점)	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·모집 계획의 적정성 (30점)	·취업애로청년 등 참여자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수단(자체인터넷, 구인·구직 DB보유 여부, 홍보매체 등) 활용, 빈일자리 업종 맞춤 홍보 전략, 홍보 전략의 실현 가능성,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
	참여자 지원·관리 방안 (20점)	·주기별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적기 지급 처리, 부정수급 모니터링, 현장지도점검, 취업애로청년 등 참여자에 대한 빈일자리 업종 근속 관리 방안
인적자원 운용계획 (15점)	인적자원 운용 방안 (15점)	·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의 적정성,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
유관기관 과의 협력(5점)	지역 네트워킹 활용 (5점)	·지역 인력수급기관(특성화고, 대학 등)과의 협업,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
비고		

붙임	사업운영 고용센터(8개 대표지청) 광역권역		
사업수행 8개 대표지청	전화번호	광역 권역	광역권역 내 지청
서울청 서울고용센터 (취업지원총괄과)	02-2004-7027 02-2004-7001 02-2004-7009	서울특별시	『서울청, 서울강남지청, 서울동부지청, 서울서부지청, 서울남부지청, 서울북부지청, 서울관악지청』의 관할 구역
중부청 인천고용센터 (취업지원총괄과)	032-460-4725	인천광역시, 경기도 일부 (북부)지역*, 강원도 철원군	『중부청, 인천북부지청, 부천시청, 의정부지청, 고양지청』의 관할 구역
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(청년지원팀)	031-231-7978	경기도 일부 (남부)지역*	『경기지청, 성남지청, 안양지청, 안산지청, 평택지청』의 관할 구역
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(취업지원총괄팀)	033-250-1984	강원도, 경기도 가평군	『강원지청, 강릉지청, 원주지청, 태백지청, 영월출장소』의 관할 구역
부산청 부산고용센터 (취업지원총괄과)	051-860-2940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	『부산청, 부산동부지청, 부산북부지청, 창원지청, 울산지청, 양산지청, 진주시청, 통영지청』의 관할 구역
대구청 대구고용센터 (취업지원총괄과)	053-667-6094 053-667-6103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	『대구청, 대구서부지청, 포항지청, 구미지청, 영주시청, 안동지청』의 관할 구역
광주청 광주고용센터 (취업지원총괄과)	062-609-8634 062-609-8548	광주광역시, 제주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전라북도	『광주청, 전주지청, 익산지청, 군산지청, 목포지청, 여수지청』의 관할 구역
대전청 대전고용센터 (취업지원총괄과)	042-480-6059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	『대전청, 청주시청, 천안지청, 충주시청, 보령지청, 서산출장소』의 관할 구역

*(중부청 경기도) 경기도 부천시, 김포시, 의정부시, 포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·연천군, 양주시, 고양시, 파주시,

*(경기지청 경기도) 경기도 수원시, 화성시, 용인시, 성남시, 광주시·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, 안양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, 과천시, 안산시, 시흥시,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

※ 위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관할 고용센터 구역의 '대표지청 광역권역'에 해당함